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9호 2023. 10. 26.(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3-2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023-2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3
- 사천시 고시 제2023-25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4
- 사천시 고시 제2023-2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 ---- 6
- 사천시 고시 제2023-258호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 시행계획 수립·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2023-2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취소 고시 ----- 10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434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10. 26.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20 (2023.9.27.)	파돌리기 옹벽 및 보행데크 (포토존) 설치	사천시 대방동 254-5번지선	699 (직접)	2023.09.27.~ 2038.09.2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도시재생과장)	
2023-21 (2023.10.13.)	갯섬항 부잔교 설치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5번지선	2,451 (직접 244, 간접 2,207)	2023.10.13.~ 2038.10.12.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22 (2023.10.13.)	산분령항 부잔교 설치	사천시 실안동 1096-39번지선	1,014.46 (직접 72.96, 간접 941.50)	2023.10.13.~ 2038.10.12.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23 (2023.10.17.)	교량(보행교) 및 상징 조형물 설치	사천시 실안동 1248번지선	379.8 (직접)	2023.10.17.~ 2053.10.1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2023-24 (2023.10.17.)	교량(보행교) 및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를 위한 가도 설치 및 철거	사천시 실안동 1248번지선	727.8 (직접)	2023.10.17.~ 2024.10.1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시도	1호선	시도 1호선	사남면 죽천리 ~ 사남면 월성리	36,568㎡	사남면 죽천리 19-1	사남면 월성리 98-1	-	0.98km
변경	시도	1호선	시도 1호선	사남면 죽천리 ~ 사남면 월성리	35,468㎡	사남면 죽천리 19-1	사남면 월성리 98-1	-	0.98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시도1호선(LIG앞 사거리~ 병둔사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고시일로부터 72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도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열람기간: 고시일(사업인정일)로부터 30일간

나.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10. 26.

사 천 시 장

신 고 인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공사완료 신고수리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내역	신고일자	수리일자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19-6 (2019.04.11.)	2019.04.11.~ 2049.04.10.	서포면 비토리 5-181번지선	845.8 (직접)	2020-15 (2020.12.29.)	하봉항 선착장 연장	'23.10.17.	'23.10.19.
	2020-8 (2020.06.16.)	2020.06.16.~ 2035.06.15.	서포면 다평리 1286-4번지선	1,942 (직접 486 간접 1,456)	2020-6 (2020.06.18.)	갯섬항 방파제 및 부잔교 설치	'23.10.17.	'23.10.19.
	2021-15 (2021.11.29.)	2021.11.29.~ 2050.12.31.	실안동 1187-9번지선	1,770 (직접)	2021-12 (2021.12.03.)	영북항 방파제 설치	'23.10.17.	'23.10.19.
	2022-1 (2022.02.03.)	2022.02.03.~ 2051.12.31.	실안동 1096-41번지선	765 (직접)	2022-2 (2022.02.21.)	주차시설 설치	'23.10.17.	'23.10.19.
	2022-8 (2022.06.02.)	2022.06.02.~ 2051.12.31.	마도동 151-25번지선	575.3 (직접)	2023-1 (2023.01.19.)	저도항 선착장 정비 (방파제 설치)	'23.10.17.	'23.10.19.
	2022-21 (2022.09.29.)	2022.09.29.~ 2036.12.31.	서포면 다평리 1283-1번지선	497 (직접)	2022-13 (2022.09.30.)	석방령 설치	'23.10.17.	'23.10.19.
	2022-22 (2022.10.25.)	2022.10.25.~ 2036.12.31.	실안동 875-7번지선	3,452 (직접 2,323 간접 1,129)	2022-17 (2022.11.14.)	실안항 물양장, 방파제 축조 및 부잔교 설치	'23.10.16.	'23.10.19.
	2022-26 (2022.11.28.)	2022.11.28.~ 2036.12.31.	서포면 자혜리 904-5번지선	470 (직접)	2022-18 (2022.11.29.)	구포항 물양장 확장	'23.10.17.	'23.10.19.
	2023-5 (2023.04.03.)	2023.04.03.~ 2038.04.02.	곤양면 중항리 214-8번지선	908 (직접 108 간접 800)	2023-6 (2023.04.05.)	안도항 선착장 정비 (계단 설치)	'23.10.17.	'23.10.19.
	2023-6 (2023.04.03.)	2023.04.03.~ 2038.04.02.	실안동 1187-2번지선	389.5 (직접 33.5 간접 356)	2023-7 (2023.04.05.)	영북항 부잔교 및 도교 설치	'23.10.17.	'23.10.19.
	2023-7 (2023.04.07.)	2023.04.07.~ 2053.04.06.	서포면 구랑리 1-9번지선	2,399 (직접 174 간접 2,225)	2023-8 (2023.04.12.)	구랑항 선착장 확장	'23.10.17.	'23.10.19.
	2023-11 (2023.05.01.)	2023.05.01.~ 2053.04.30.	용현면 주문리 928-2번지선	328.8 (직접)	2023-12 (2023.05.10.)	주문항 선착장 정비 (해수유통구, 계단 설치)	'23.10.17.	'23.10.19.
	2023-14 (2023.05.25.)	2023.05.25.~ 2038.05.24.	대포동 438-6번지선	826.5 (직접 102.5 간접 724)	2023-14 (2023.06.14.)	대포항 부잔교 설치	'23.10.17.	'23.10.19.
	2023-15 (2023.05.25.)	2023.05.25.~ 2038.05.24.	곤양면 중항리 105-5번지선	925.7 (직접 86.7 간접 839)	2023-15 (2023.06.14.)	중항항 부잔교 및 도교 설치	'23.10.17.	'23.10.19.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 - 25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내용

지역명	위 치	유형	면적 (㎡)	재해위험도 등급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정비 전	정비 후		
통창공원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236-1번지 일원	붕괴 위험	3,310	D	B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요소 해소	'2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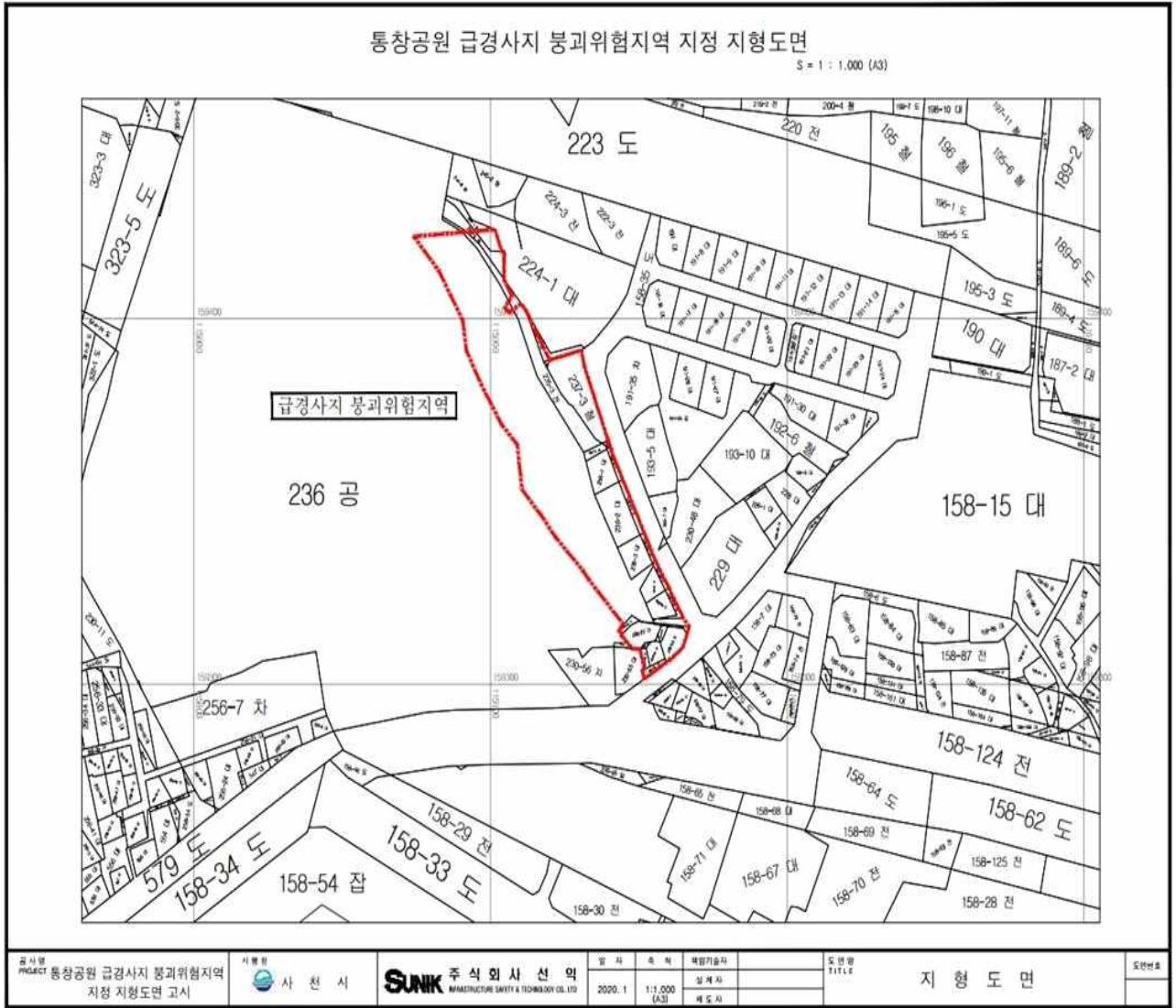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2023. 10. 26.

3.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5)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도면(통창공원)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10. 26.

사 천 시 장

신 고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수리일자)	공 사 내 역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10 (2023.4.25.)	2023.04.25.~ 2038.04.24.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4-13번지선	2,961 (직접 489 간접 2,472)	2023-21 (2023.10.17.)	부잔교 및 도교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21 (2023.10.13.)	2023.10.13.~ 2038.10.12.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5번 지선	2,451 (직접 244 간접 2,207)	2023-22 (2023.10.20.)	부잔교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22 (2023.10.13.)	2023.10.13.~ 2038.10.12.	사천시 실안동 1096-39번지선	1,014.46 (직접 72.96 간접 941.5)	2023-23 (2023.10.20.)	부잔교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2023-23 (2023.10.17.)	2023.10.17.~ 2053.10.16.	사천시 실안동 1248번지선	379.8 (직접)	2023-24 (2023.10.23.)	교량(보행교) 및 조형물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2023-24 (2023.10.17.)	2023.10.17.~ 2024.10.16.	사천시 실안동 1248번지선	727.8 (직접)	2023-25 (2023.10.23.)	가도 설치 및 철거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58호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 시행계획 수립·고시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낙지포항)
2. 사업의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 일원
3. 계획의 범위 : 280ha
4.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낙후된 어촌, 어항을 통합하여 활성화시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어촌, 어항재생사업’임.
 - 생업공간인 어항과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어촌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5년간)
- 총사업비 : 8,574백만원(국비 6,001, 도비 771, 시비1,802)
- 사업계획의 개요
 - 공통사업 : 물양장, 부잔교, 준설, 어구보관창고 및 어민회관
 - 특화사업 : 비토빌센터(폐교개축), 비토빌센터(숙박), 비토피아 마당, 등대 및 담장조형물, 안내판
 - S/W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홍보, 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등

6. 관련자료 열람방법

-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6)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

- 편입토지조서(낙지포항)

연번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1	서포면	비토리	14-13	잡	6,504.8	1,000	경상남도	어구보관창고 어민회관
2	서포면	비토리	30-1	학	2,093	2,093	사천시	비토빌센터 (폐교개축,신축) 비토피아마당
3	서포면	비토리	259-13	학	278	278	사천시	
4	서포면	비토리	30-6	학	1,084	1,084	사천시	
5	서포면	비토리	45-12	제	987	987	해양수산부	등대
6	서포면	비토리	14-14	제	294	294	경상남도	등대 및 담장조형물
7	서포면	비토리	14-9	제	1,049	1,049	해양수산부	담장조형물

[붙임] 시행계획 총괄표

구분	기본계획 사업내용						시행계획(1차)		잔여(협의중)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내역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공통사업	어항시설정비	계류시설	물양장	물양장 조성	2,030	4,600m ²	4,600m ²	2,220			
			부잔교	부잔교 설치	600	2EA	2EA	446			
		기타어항시설	준설	준설 조성	320	4,000m ²	15,000m ²	592			
		기능편익시설	어구보관창고 및 어민회관	어구보관창고 및 어민회관 조성	800	400m ²	479.35m ²	1,496			
(1) 소 계					3,750	-		4,754			
특화사업	정주개선	문화복지	비토빌센터(폐교개축)	비토빌센터(폐교개축)	800	400m ²	259.76m ²	375			
		경관개선	비토피아 마당	비토피아 마당	300	1,000m ²	526m ²	271			
	관광진흥	관광래저	비토빌센터(숙박)	비토빌센터(숙박)	752	470m ²			131.47m ²	691	해수부 기본계획 협의 완료 후 시행계획 예정
		문화복지	등대 및 담장조형물	등대 및 담장조형물	500	1식	1식	451			
		경관개선	안내판	안내판	150	1식	1식	135			
숙박시설	동펜션	동펜션	640	2EA				0EA	-	해수부 기본계획 협의 완료 후 시행계획 예정	
(2) 소 계					3,142	-		1,232		691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리더교육, 동아리, 주민맞춤형 등	111	1식	1식	111			
		홍보		홈페이지 개발	52	1식	1식	52			
		컨설팅		축제기획, 마을법인설립교육 등	52	1식	1식	52			
		마케팅		홍보영상, 인쇄홍보물 등	20	1식	1식	20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지역협의체 운영비	6	12회	12회	6			
		고용창출	사무장	사무장 채용	34	24회	0회	-			
(3) 소 계					275	-		241			
사업지원	설계비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수립			188	1식	1식	188			
		기본 및 실시설계			500	1식	1식	749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508	1식	1식	695			
		기타경비			211	1식	1식	24			
(4) 소 계					1,407	-		1,656			
어촌뉴딜 합계 [(1)+(2)+(3)+(4)]					8,574			7,883		691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고시 제2023-2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취소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1. 승인취소 연월일: 2023. 10. 23.
2. 취소사유: 최초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받은 위치 변경으로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3.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제2022-14호(2022.08.04.)
4. 점용·사용의 목적: 해상부유구조물(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5. 점용·사용의 장소: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5번지선 공유수면
6. 점용·사용의 면적: 387.2m² (직접 54, 간접 333.2)
7. 승인취소 대상자: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해양수산물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공고 제2023-1434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등)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시장의 책무로 개정(안 제4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범위 신설(안 제5조)

다. 개방화장실의 종류를 ‘상시 개방화장실’, ‘일정시간 개방화장실’로 구분(안 제14조)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라.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금지행위의 유형’ 구체화 신설(안 제21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2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8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사천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청소를 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주기적인 도색을 할 것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9호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1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 치 년 도				관 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 주체	설 치 주 체									직 급		
	관 리 주 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m)	화장실 면적 (m)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I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남, 여) (전화번호:)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 위생용품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유료화장실 신고필증</h2>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위생용품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관 련 법 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